

2026년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6. 4. 22.
행정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6. 4. 8. 마포구청장

나. 회부일자: 2026. 4. 15.

다. 상정일자: 제283회 임시회 제2차 행정건설위원회(2026. 4. 22.)

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경제진흥과장 권준희】

가. 제안이유

-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2026년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에 대하여 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출연대상: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최항도)
 - 재단소개: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1999년 설립된 서울시 소기업·소상공인 종합지원기관, 신용보증사업·상권활성화 프로그램 등 추진

- 출연금액: 1억 원
 - '2026년 마포구 소기업·소상공인 특별신용보증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특별보증 재원 추가 지원
- 출연근거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기본재산)
 - 「서울특별시 마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 4조(기금의 조성)
 - 「서울특별시 마포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7조(특별신용보증지원)
- 사업내용: 특별신용보증사업 추진
 - 사업성은 있으나 담보력이 부족한 마포구 내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 서울 신용보증재단이 보증비율과 보증료율을 우대하여 신용보증서를 발급하고, 이를 통해 시중은행에서 운영자금을 저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지원
- 출연 필요성
 - 중동 사태로 인한 유가·물가 상승 압력, 금리 인상에 따른 경기 둔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채무를 보증하여 자금 유통을 원활히 함으로써 안정적인 경영환경을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필요성 증대
 - 마포구 새마을금고와 협력하여 공동으로 재원을 조성함으로써 저금리 금융 지원을 확대하고자 함
- 추진일정
 - (2026. 4.) 구의회 의결 요청
 - (2026. 4.) 마포구-마포구새마을금고 특별출연 협약 체결
 - (2026. 5.)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다. 참고사항(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18조 (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 「서울특별시 마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
- 「서울특별시 마포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7조

3. 검토보고(전문위원 권하나)

-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을 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바, 2026년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추가 편성에 대해 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임.
-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은 담보력이 부족하여 금융 접근성이 낮은 관내 소기업·소상공인에게 신용보증을 제공함으로써 시중은행의 저금리 운영 자금 대출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적인 지원 수단임. 특히 최근 내수 부진, 금리 부담, 대출심사 강화 등으로 자금 조달 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특별신용보증사업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음.
- 출연금은 재단의 특별보증 한도 확충 및 대위변제 자원(지불준비금)으로 활용되어, 실질적인 보증여력 확보를 뒷받침하는 역할을 함.

「서울신용보증재단 용자사업 개요」

- 사업명: 마포구 소기업·소상공인 특별신용보증 용자 지원
- 지원대상: 마포구 소재 소기업·소상공인 (단, 용자제한업종은 제외)
- 보증한도: 업체당 최대 1억 원
- 대출기간: 최대 5년 이내(1년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등)
- 대출금리: 3개월 CD변동금리 적용 ('26년 공고일 기준: 2.61~3.11%)
- 사업내용: 마포구 및 시중은행이 서울신용보증재단에 재원을 출연하여 담보력이 부족한 사업자가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 우리 구는 그간 서울신용보증재단과 협력하여 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2021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경영 위기 대응을 위해 16억 원을 출연하는 등 재정적 지원을 이어온 바 있음.

< 연도별 신용보증재단 마포구 출연금 현황 >

(단위: 억 원)

| 연도 | 2005 | 2009 | 2010 | 2012 | 2013 | 2021 | 2023 | 2024 | 2025 | 2026 | 합계 |
|----|------|------|------|------|------|------|------|------|------|------|----|
| 금액 | 2 | 2 | 2 | 2 | 2 | 16 | 10 | 10 | 10 | 10 | 66 |

- 이에 따라 현재까지 우리 구의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은 총 66억 원 규모로, 지역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 및 경영 안정을 위한 재정적 기반이 지속적으로 확충되어 온 것으로 평가됨.
- 특히, 2026년 특별신용보증 사업은 마포구, 우리은행, 하나은행의 출연을 기반으로 총 25억 원 규모의 재원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약 312억 원 규모의 보증 한도를 운영하고 있음. 이는 출연금의 약 12.5배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제한된 재원을 활용하여 보증 공급을 확대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음.

< 출연 현황 >

(단위: 억 원)

| 구 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2026년 | 합 계 | |
|------------------------|-------|-------|-------|-------|---------|----|
| 출연금 | 마 포 구 | 10 | 10 | 10 | 10 | 40 |
| | 우리은행 | 10 | 10 | 10 | 10 | 40 |
| | 하나은행 | - | - | - | 5 | 5 |
| 특별보증한도 (출연금의 12.5배) | 250 | 250 | 250 | 312.5 | 1,062.5 | |

※ '26년 마포구-서울신용보증재단-우리은행-하나은행 특별출연 업무 협약 체결('26. 2. 27.)

- 최근 중동 사태 등 대외 여건 변화에 따른 유가 상승, 물가 불안 및 금리 부담 등으로 소상공인의 경영 환경이 악화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신용보증을 통한 금융지원 확대는 자금 접근성이 취약한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음. 금융기관과의 협약을 통한 매칭 방식은 재정부담을 완화하면서 정책 효과를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적 의의가 있는 것으로 보임.

- 금번 새마을금고와의 협약은 동의안 의결 이후 체결될 예정으로, 마포구 1억 원과 새마을금고 3억 2천만 원이 추가 출연됨에 따라 보증한도는 기존 312.5억 원에서 약 365억 원 규모로 확대될 예정임. 이는 약 52억 원 이상의 추가 보증 공급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소상공인 자금 지원 확대 측면에서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임.

「추가 출연 개요」

○ 추진배경

- 중동 사태로 인한 유가·물가 상승, 금리 인상 등 경기 상황이 악화됨에 따라 영세업자의 자금난 해소 지원 필요성 확대
- 마포구새마을금고 출연 의사에 따른 구비 합동 출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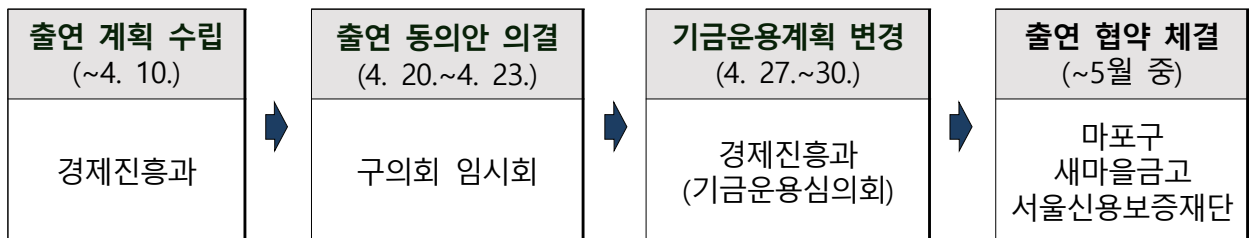
○ 출연금액

- (마 포 구) 1억 원 (중소기업육성기금 공급예금)
- (새마을금고) 3억 2천만 원

※ 1억 6천만원(마포구새마을금고 8개 본점×각 2천만원) + 1억 6천만원(새마을금고중앙회)

⇒ 2026년 총 보증한도 365억 원 (기존 보증한도 312.5억 원 + 추가 보증한도 52.5억 원)

○ 출연절차



- 본 출연과 관련한 기금운용계획 변경 여부를 살펴보면, 정책사업비 약 50억 원 대비 금번 출연금 1억 원은 법령상 기준인 20% 범위에 미치지 않는 규모¹⁾로, 기금운용계획 변경 의결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1) 2026년도 기금운영계획안 p79 <중소기업 육성기금 ③지출계획>

- 한편, 특별신용보증 사업은 2005년부터 2025년까지 총 3,473개 업체에 약 1,161억 원 규모의 보증을 지원하는 등 실질적인 정책 효과를 나타내고 있으며, 2026년에도 3월 말 기준 98개 업체에 약 38억 원 규모의 보증이 추진되는 등 사업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

(참고) 특별신용보증 지원실적

▶ 2005~2025년

(단위: 개소, 억 원)

| 합 계 | | 2005년 ~2020년 | | 2021년 | | 2022년 | | 2023년 | | 2024년 | | 2025년 | |
|-------|-------|-----------------|-----|-------|----|-------|----|-------|-----|-------|-----|-------|-----|
| 업체 | 금액 | 업체 | 금액 | 업체 | 금액 | 업체 | 금액 | 업체 | 금액 | 업체 | 금액 | 업체 | 금액 |
| 3,473 | 1,161 | 1,074 | 310 | 27 | 8 | 274 | 93 | 703 | 250 | 661 | 250 | 734 | 250 |

▶ 2026년(추진중, 3.31.기준): **98개 업체 / 3,831,400,000원**

- 종합적으로 볼 때, 본 출연은 기존 사업의 연속성과 정책적 필요성이 인정되고, 재원 규모 또한 적정 범위 내에서 추진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 지방재정법**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4조(기금의 조성)**

-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1.3.17>
 1. 서울특별시 마포구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3. 그 밖의 출연금·보조금·차입금·예수금(豫受金) 및 용자상환금 등
- ② 구청장은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매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편성하여 출연할 수 있다.

제5조(기금의 용도)

-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신설 '04.11.20, 개정 2011.3.17)
 1. 중소기업의 시설자금, 운전자금 및 기술개발자금의 용자
 2. 중소기업육성지원을 위한 사업비 출연(서울신용보증재단 등)
 3.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 ② 기금은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한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신설 '04.11.20, 개정 2011.3.17.)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8. 기타: 없음